

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및 제출일자 : 포항시장(2024. 05. 31.)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06월 04일

다. 상정일자

- 제315회 포항시의회(제1차 정례회)
 -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(2024. 06. 26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그린웨이추진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도시공원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“파크골프장” 을 녹지 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규정(안 11조의2)

3. 관련법령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명권)

- 본 조례안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위임한

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시공원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11조의 2에서 “파크골프장”을 녹지 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규정함.

○ 종합검토 결과,

파크 골프는 새로운 생활 체육으로 주목받는 스포츠이자 친목 도모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, 중장년층으로 나이대가 낮아지는 추세로 누구나 건강을 위해 즐겁게 할 수 있고 노년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으로 건강 증진과 스포츠 문화 육구를 충족해 주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

○ 현재 포항시에는 남구 지역에 지곡 파크골프장, 해도동 형산 파크골프장, 형산 장애인 파크골프장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, 북구 지역에는 흥해 곡강천 파크 골프장 1개소가 설치되어 총 4개소가 운영 중으로 수요에 비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.

○ 따라서 본 개정안은 완충녹지내 파크골프장 조성을 가능토록 함으로 도시공원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족한 파크골프장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, 노년층 체육복지 확대를 통한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,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6. 토론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